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9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의원



**복지도시위원회**  
(전문위원 김동원)

# 검 토 보 고 서

(전문위원 김동원)

## 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-145호
- 나. 제 출 자 : 차해영 의원 외 9명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24.

## 3. 제안이유

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 
에서,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 
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 
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### 가.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(안 제7조 제3항)

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 
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

### 나. 자문위원회의 구성(안 제9조)

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  
위원회를 둘 수 있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11. 18. ~ 11. 23.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부터 마포구 장기요양 요원 보호를 위하여 권리보장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
-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
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사항을 보완하고자  
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,  
안 제9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 
제2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음.
- 종합의견  
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한 지원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 
다만,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전 등에 대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7. 기타자료

### 가. 관련 법규

####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“노인성질환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11.>

##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
2. “실무협의체”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3. “실무분과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4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)**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9조·제10조</u> (생략)</p>	<p>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9조(자문위원회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·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